경운대학교 학생권익위원회 규정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경운대학교(이하 "대학"이라 한다)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권 보장과 인권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대학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갈등을 해결하는 통합적 음부즈만(Ombudsman) 역할의 수행 조직을 구성함에 있어 제반사항을 관장하는 학생권익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을 둔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.

- 1. "학생 갈등"이라 함은 학생들에게 대학 내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고충, 대립과 충돌을 야기시키는 일련에 행위(사건 등)를 말한다.
- 2. "학습권 보장"이라 함은 학생들이 학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대학 내 제도의 범위 내에서 그 방법과 내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.
- 3. "학생 권익보호"라 함은 학생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학생 신고 사항을 청취 및 해결함으로써, 공동체의 통합과 회복적 정의를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.

제3조(권한 및 기능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며 수행한다.

- 1. On-Off Line VOS(Voice Of Students) 운영
- 2. 학생 갈등, 학습권 보장 및 학생 권익보호에 반하는 각종 사안에 대한 조사
- 3. 조사결과에 따른 처분 요구
- 4. 지원부서 담당자에 대한 비밀 유지, 보고 및 지도
- 5. 제도 개선 및 개정에 대한 권고
- ② 위원회는 각 소관 부서(기관, 단체 등)의 의견을 청취·조율·조정할 수 있으며, 필요할 때에는 해당 부서(기관, 단체 등)에 관련 내용(자료 등)을 요구할 수 있고,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·결의할 수 있다.
- ③ 대학 내 각 소관 부서(기관, 단체 등)은 위원회의 요구, 지도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,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총장은 당사자에게 필요한 불이익 조치를 강구한다.
- 제4조(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) ① 잠재적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통해 2차 피해를 방지 하고 학생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.
 - ② 신고인 또는, 조사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③ 접수된 내용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

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 만약,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회는 총장에게 징계처분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.

제5조(적용 범위) 대학의「학칙」및 제 규정을 적용받는 모든 구성원은 이 규정을 적용받는다.

제2장 조직

- 제6조(구성 및 자격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전문위원 및 학생대표를 포함한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위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.
 - 1.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한다.
 - 2. 위원은 부교수 이상의 교수 및 10년 이상 재직한 직원 중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 - ② 위원회는 2인 이하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, 전문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변호사
 - 2. 법학·행정학 전공 대학교수
 - 3. 10년 이상의 관련 업무 및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내·외부 인사
- 제7조(임기) 위원장의 임기는 부총장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전문위원을 외부에서 위촉하는 경우 그 기간을 따로 정한다.

제3장 운영

- 제8조(회의) ① 위원회는 총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 -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③ 인권침해 등의 사건에 관한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
- 제9조(사안 접수) ① On-Off Line VOS(Voice Of Students)를 통해 접수된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접수를 취소하고 지체 없이 접수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.
 - 1.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접수한 사안에 대해 당사자가 조사를 원치 않을 경우
 - 2. 사안의 접수를 익명 또는, 특정되지 않은 주소나 불분명한 연락처를 기재한 경우
 - 3. 피해자 또는,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
 - 4. 종결된 사안과 유사한 사안에 대한 반복 접수의 경우
 - 5. 기타 학생의 권익과 관련이 없는 사안
 - ② 위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,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접수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.

제10조(불이익 금지) 이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신고, 진술, 증언, 자료 등의 제출 또는,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, 전보, 징계, 부당한 대우,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.

제4장 보칙

- 제11조(수당 등 경비) 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대학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. ② 제6조제2항의 외부 전문위원에게는 수당, 출장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**제12조(위원회 사무)** 위원회의 사무는 교학처에서 관장한다. <개정 2021.10.01.>
- 제13조(C용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과 학칙 및 제 규정을 준용한다.
- 제14조(운영세칙)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부 칙<2020.03.01.>

- 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- 2.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구성·운영 중인 학생권익위원회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<2021.10.01.>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